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1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2항 청소년시설 감면대상에 일부 계층이 누락되는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청소년시설 감면대상 자격기준을 종전 “수급권자”에서 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”으로 확대(안 제8조제2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나. 예산조치 :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(36백만원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규제대상 아님

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 : 해당 없음

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협의완료

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평가대상 아님

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적정

(6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 : 갈등진단대상 아님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
실·본국·국 협의 사항 : 해당 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17. 6. 29. ~ 2017. 7. 19.) 결과 : 의견 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붙임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도 붙임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이문자 (☎ 2133 - 4122)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사용료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인 <u>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	<p>제8조(사용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<u>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</u>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

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시립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이용 시 감면(100%)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청소년시설 예산 및 시 보조금(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감면 손실분 보전) 소요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, 비용 추계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추정

3. 미첨부 사유

○ 지원대상 확대추이 및 재정추계

(단위 : 명, 천원)

구분	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지원명수	2,325	490	477	465	453	440
감면액	223,000	47,000	46,000	45,000	43,000	42,000
감면보전액 (시 보조금)	170,000	36,000	35,000	34,000	33,000	32,000

* '16년 감면내역×0.7(일반 청소년 대비 학교밖·19~24세 청소년 비율)/38(교육급여 대비 주거급여 대상자 비율)

* 청소년인구 감소율 : 26% 보전률 : 77% 적용

4. 작성자

○ 청소년정책과 백미화(2133-4122)